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7. 4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7. 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제안이유

○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

주요골자

○ 행정기구

구 분	현 행	조 정	증·감
계	5국2실11소사무국3구50과	5국2실10소사무국3구50과	1소 감소
분 청	5국2실21과	5국2실21과	
직 속 기 관	3소	3소	
사 업 소	8소5과	7소5과	1소 감소
구 청	3구24과	3구24과	
동	35개동	35개동	
의 회	1사무국	1사무국	

○ 조정내역

【소단위】

- 폐지 : 하수정화사업소(민간위탁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민간위탁업체는	○ (주)대우건설로 당초 공사를 시행했던 업체 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97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

주요골자

○ 행정기구

구 분	현 행	조 정	증·감
계	5국2실11소사무국3구50과	5국2실10소사무국3구50과	1소 감소
본 청	5국2실21과	5국2실21과	
직 속 기 관	3소	3소	
사 업 소	8소5과	7소5과	1소 감소
구 청	3구24과	3구24과	
동	35개동	35개동	
의 회	1사무국	1사무국	

○ 조정내역

【소단위】

• 폐지 : 하수정화사업소(민간위탁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중 “교통지도사업소, 하수정화사업소”를 “교통지도사업소”로 한다.

제4조의 별표1중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란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8호를 삭제한다.

조례 제1692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한시기구 적용시한) 시 본청 실업대책총괄과의 기구설치 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(생략) 1. (생략) 2. 사업소 : 맑은물푸른숲사업소, 농산지원사업소, 청소사업소, 시립도서관,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, <u>교통지도사업소</u> , <u>하수정화사업소</u>	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사업소 : <u>교통지도사업소</u>								
제4조(소제지) (생략) [별표1]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제4조(소제지) (현행과 같음) [별표1]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 관 명</th> <th>소 재 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</td> <td>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 관 명	소 재 지	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 관 명</th> <th>소 재 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삭제></td> <td><삭제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 관 명	소 재 지	<삭제>	<삭제>
기 관 명	소 재 지								
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								
기 관 명	소 재 지								
<삭제>	<삭제>								
제17조(소관사무) (생략) 1~7. (생략) 8. <u>하수정화사업소</u>	제17조(소관사무) (현행과 같음) 1~7. (현행과 같음) <삭제>								

<p>가.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</p> <p>나.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</p> <p>다. 방류수의 수질관리</p> <p>라.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</p> <p>마. 시설물 내의 전기·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</p> <p>바.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</p> <p>부 칙 <1999. 9. 8 조례 제1692호></p> <p>제4조(한시기구 적용시한) 시분청 경제통상국 실 <u>업대책총괄과의 기구설치 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하수정화사업소는 민간위탁전까지로 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부 칙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한시기구 적용시한) 시분청 경제통상국 실 <u>업대책총괄과의 기구설치 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
---	--